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60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4. 29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·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정함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나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2) 입법예고 : 생략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당직수당 지급) 일·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당직수당 지급)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회당 30,000원을 지급한다.	제3조(당직수당 지급) 일·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**지방공무원법(법률 제9420호, 2009.2.6)**

제59조 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